

대법원 2026. 5. 11. 자 중요결정 요지

민 사

2024마6174 소송비용액확정 (나) 재항고기각

[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, '회사 이외의 단체'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'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'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◇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」 제15조 제3항의 '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'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

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」(이하 '인지규칙'이라고 한다) 제18조의2는 “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. 다만,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, 제15조의2, 제17조의2,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 한편, 인지규칙 제15조는 회사 등 관계소송의 소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.

회사 이외의 단체, 즉 회사 이외의 사단 또는 재단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지만(인지규칙 제15조 제2항, 제3항), 그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이다(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).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이 말하는 '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'이란 소 제기 목적이 소를 제기한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을 의미하므로,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(대법원 2025. 3. 17. 자 2024마8346 결정 참조). 그러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, 소 제기 목적이 주로 소를 제기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'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'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 적용된다.

☞ 피신청인들이 회사 이외의 단체인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고, 신청인은 위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, 피신청인들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,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으로, 사법보좌관은

이 사건 소가 인지규칙 제18조의2에서 정한 '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'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신청인별 소가를 각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변호사보수를 계산하였음

☞ 원심은,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의 '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'은 소 제기 목적이 소를 제기한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고, 승소할 경우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, 피신청인들이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다투는 소송은 소 제기 목적이 피신청인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승소할 경우 피신청인들만이 이익을 받으므로,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음

☞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,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